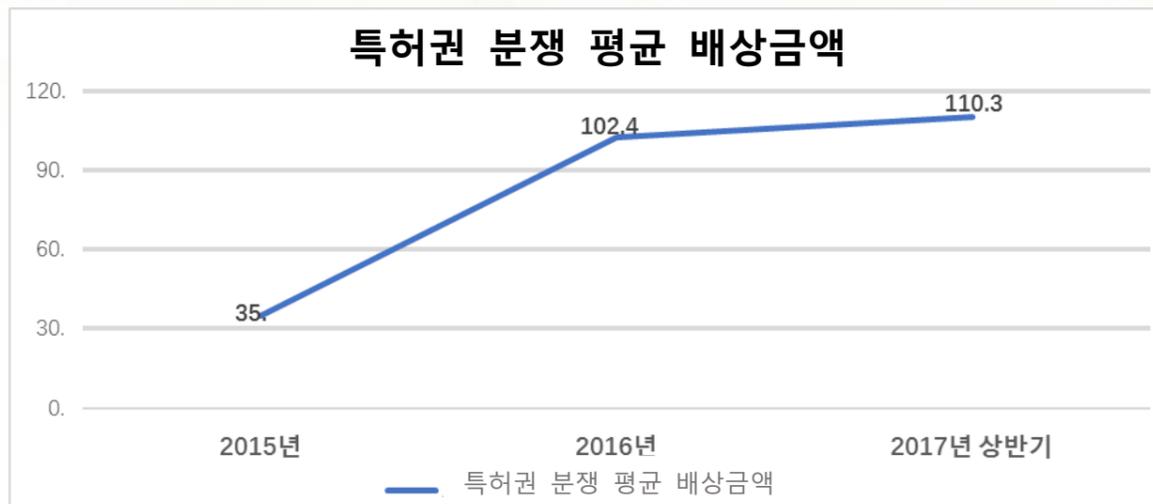


북경 지식재산권 법원 특허심판 빅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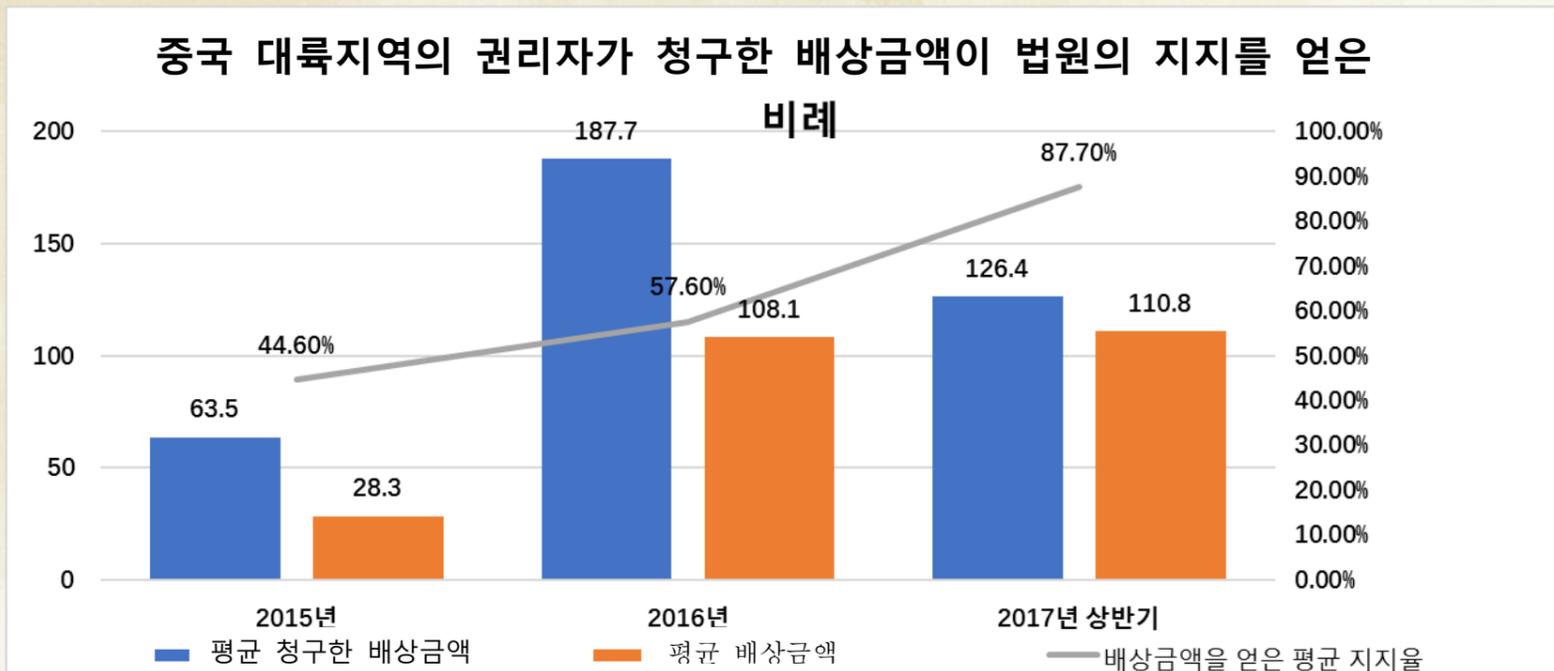
북경 지식재산권 법원의 2104년 11월 6일 개원 이래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심리판결한 1813건의 안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바 그중 특허 민사분쟁이 682건(37.6% 차지)이었고 특허 행정분쟁이 1131건(62.4% 차지)이었습니다. 특허 민사안건에서 특허권 침해분쟁이 668건이었고 특허권 소요권 분쟁이 14건이었으며, 특허 행정안건에서는 특허권 무효 행정분쟁이 758건이었고 특허출원 기각재심 행정분쟁이 335건이었으며 기타 특허 행정분쟁이 38건이었습니다. 상기 안건을 종합한 상황은 북경 지식재산권 법원의 현재 특허심판 업무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특허권 침해의 배상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리자가 총 116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서 승소하였고 획득한 침해 배상액은 현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및 2017년 상반기에 선고받은 배상금액은 각각 35만원, 102.4만원과 110.3만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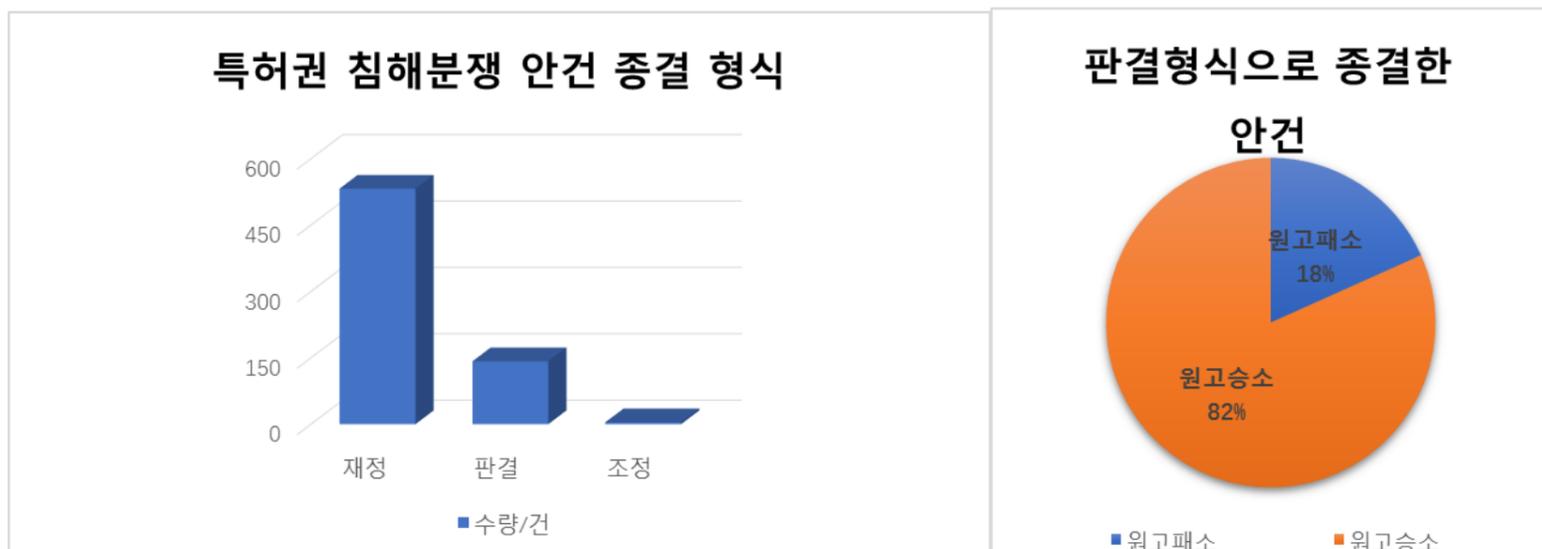
배상금액을 청구하여 법원의 지지를 얻은 비례로부터 보았을 때 2015년 중국 대륙지역의 권리자가 청구한 배상금액은 평균 63.5만원이고 선고받은 배상금액은 평균 28.3만원이며 배상금액을 얻은 지지율은 평균 44.6%입니다. 2016년 청구한 배상금액은 평균 187.7만원(전년대비 195.6% 증가)으로 증가되고 선고받은 배상금액은 평균 108.1만원(전년대비 282.0% 증가)이며 배상금액을 얻은 지지율은 평균 57.6%(13% 증가)에 달하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 권리자가 청구한 배상금액은 평균 126.4만원이고 선고받은 배상금액은 평균 110.8만원이며 배상금액을 얻은 지지율은 평균 87.7%로 상승하였습니다. 해외 및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표본자료가 적어(총 10건) 통계적 의의가 부족하지만 배상금액을 얻은 지지율은 마찬가지로 뚜렷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기 데이터는 북경 지식재산권 법원이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려는 확고한 결심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상기 승소판결 중 9 건은 미판결이지만 침해 중지를 안건이었습니다. 그중 3 건은 특허권기간이 만료된 원인으로, 3 건은 피고가 단지 시장경영자인 원인으로, 2 건은 원고가 침해 중지를 주장하지 않은 원인으로, 1 건은 침해행위가 이미 중지되었기 때문이며 아직 국가이익, 공공이익으로부터 고려하여 침해중지를 선고하지 않은 상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허분쟁이 여러측의 이익에 관련되는 안건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법원이 이 방면에서 새로운 돌파가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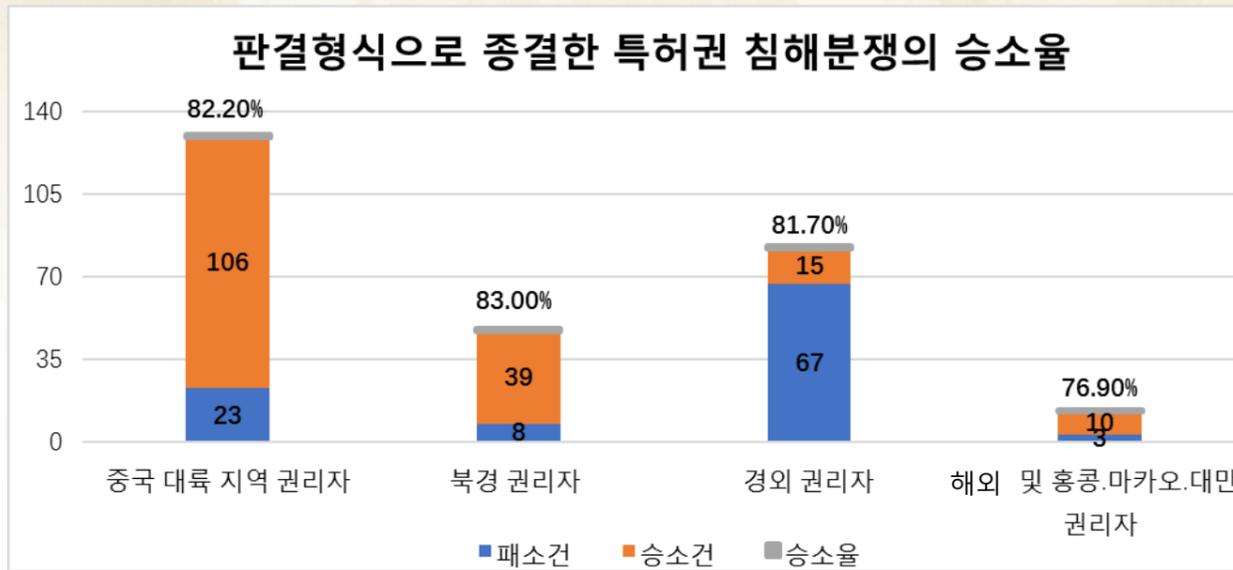
2. 특허권 침해분쟁은 대부분 재정(裁定)형식으로 안건을 종결하며 판결(判決) 형식으로 종결한 안건 중 원고가 승소한 비율이 큼니다.

668 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서 단 142 건의 안건이 판결형식으로 종결되었고 다른 4 건은 조정형식으로 종결되었으며 나머지 522 건은 모두 재정형식으로 안건이 종결된 것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78.1%에 달하였습니다. 그 주요원인으로는 침해소송단계에서 피고가 안건과 관련된 특허의 관리안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는바, 일부분의 원고는 특허가 무효되는것을 두려워하여 자진 철회하였고 일부분의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안건의 특허권이 이미 무효판결을 받아 법원에서 기각재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이외에 당사자가 조정 또는 화해를 거쳐 취하,법원의 소명을 거쳐 취하한 안건의 비율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판결이 현단계 특허 민사분쟁 해결에 있어서의 최종형식이 아니라 분쟁해결의 다원화 의식과 방식이 진일보 제고될 공간이 있다는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판결형식으로 종결한 142 건의 안건에서 원고가 승소한것은 116 건으로 승소율이 81.7%에 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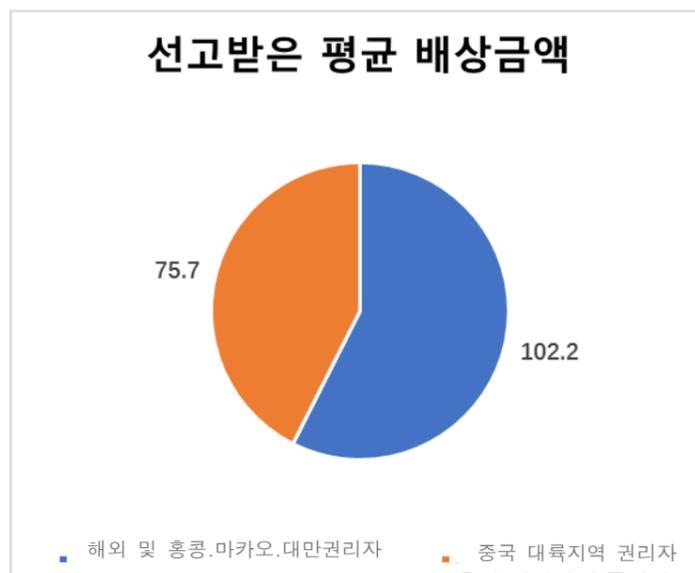


3. 경외(京外) 및 해외,홍콩.마카오.대만과 관련된 주체가 평등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판결형식으로 종결한 특허권 침해분쟁 중 중국 대륙지역의 권리자는 129 건의 안건에서 106 건 승소하였고 승소율은 82.2%였습니다.그중 북경 권리자의 47 건의 안건에서 39 건 승소하였고 승소율은 83.3%였으며 경외(京外) 권리자의 82 건의 안건에서 67 건 승소하였고 승소율은 81.7%로 북경 권리자의 승소율와 거의 같았습니다. 해외 및 홍콩.마카오.대만과 관련된 권리자의 13 건의 안건에서 10 건 승소하였고 승소율은 76.9%로 중국 대륙지역 권리자의 승소율에 비하여 조금 낮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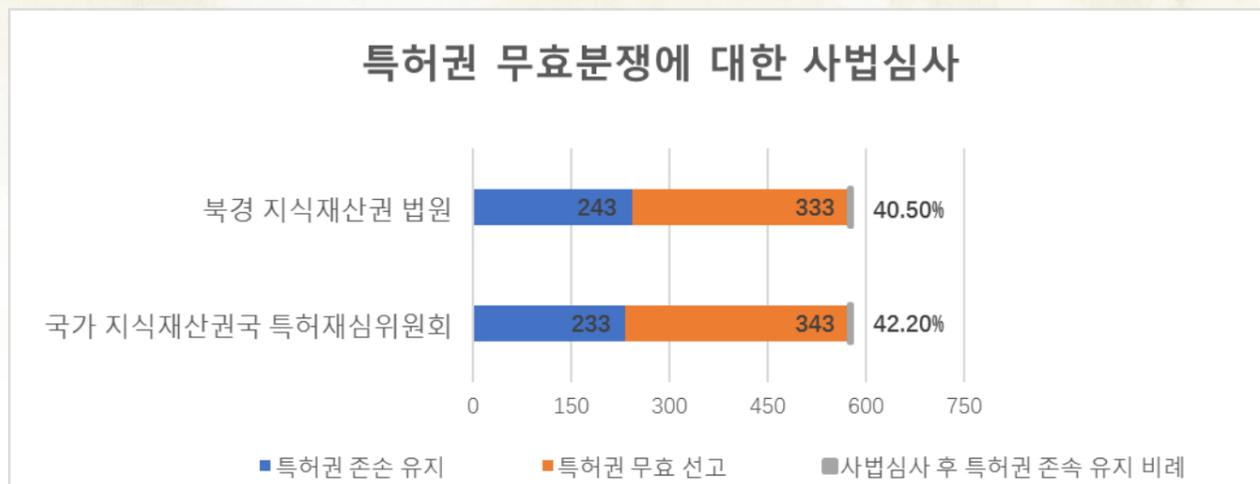
하지만 배상금액 방면에서 해외 및 홍콩.마카오.대만과 관련된 권리자가 선고받은 평균 배상금액은 102.2 만원으로 같은 시기 중국 대륙지역의 권리자가 선고받은 평균 배상금액인 75.7 만원을 훨씬 초과하였습니다.이상 데이터를 종합하여 북경 지식재산권 법원이 특허보호 방면에서 기본적으로 북경내외, 중국내외 각 주체에 대하여 일시동인(一視同仁), 동등대우를 실현하였다는 초보적인 결론을 얻을수 있습니다.



4. 전반적으로 사법심사는 권리자에게 더욱 유리합니다.

한편으로 특허권 침해의 배상금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것은 사법이 특허의 가치에 대하여 충분히 인정한다는것을 말해주며 기존과 잠재하고 있는 권리자들이 부단히 혁신을 강화하고 생산을 확대하는것을 격려하는데 유리합니다.또 한편으로 판결 형식으로 종결한 576 건의 특허권 무효 행정분쟁에서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특허재위회로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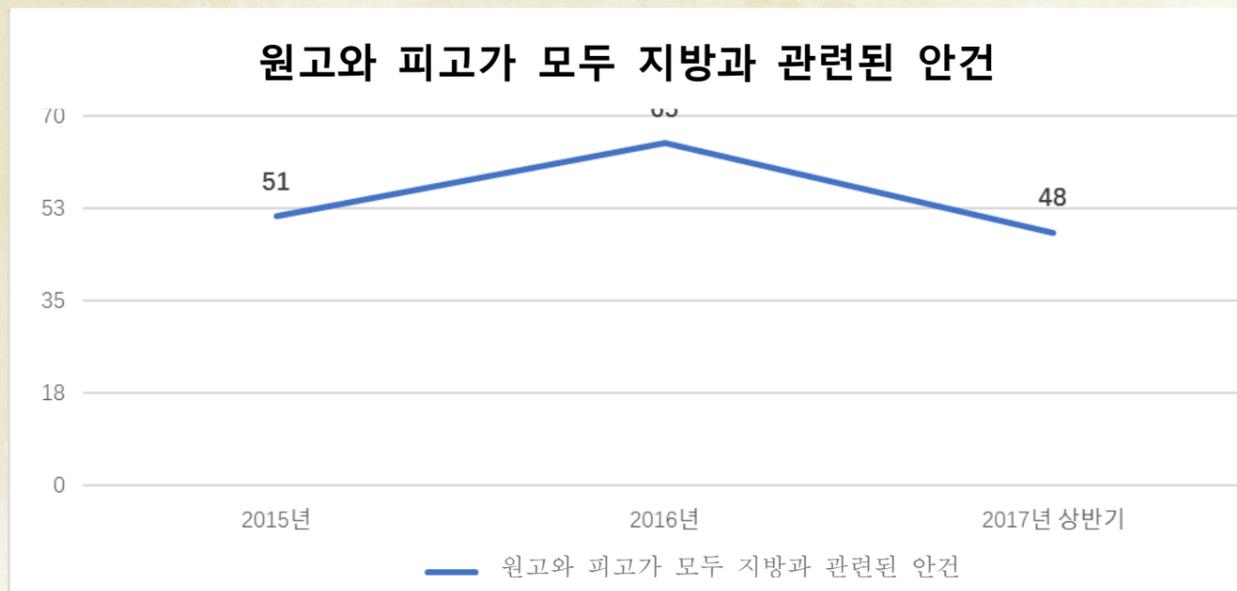
칭)는 233 건(40.5% 차지)의 안건에 대하여 특허권의 존속을 유지하였고 343 건(59.5% 차지)의 안건에 대하여 특허권 무효를 선고하였습니다.하지만 상기 행정결정이 사법절차에 진입한 후 특허권 존속을 유지한 행정결정 중 34 건(발명 13 건,실용신안 12 건,디자인 9 건)이 북경 지식재산권 법원으로부터 취하되었고 특허권 무효를 선고받은 행정결정 중 44 건(발명 17 건,실용신안 21 건,디자인 6 건) 이 북경 지식재산권 법원으로부터 취하되었습니다.사법심사 후 취하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특허권 존속을 유지한 안건 수량은 243 건으로 조절하여야 하고 특허권 무효를 선고받은 안건 수량은 333 건으로 조절하여야 하며 양자의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2.2%와 57.8%입니다.즉 사법심사를 거친 후 특허권 존속이 유지된 비례가 1.7%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335 건의 특허출원 기각재심 행정분쟁에서 북경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총 27 건의 행정결정을 취하하였으며 취하율은 8.1%로 동종 안건이 북경 지식재산권 법원 성립하기전의 취하율보다 높았습니다.이상 상황은 북경 지식재산권 법원이 특허권의 획득 및 보호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동시에 전문화 심판,기술조사관,전문화 인민 배심원 등 심판체제의 개혁에 힘입어 판사의 사법능력이 실질적으로 제고되고 사법심사가 더욱 권위가 있으며 사법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주도적 작용이 각 세부적인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5.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해외 또는 지방(북경이외 지역)와 관련된 안건 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사판결한 특허민사 분쟁 중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해외에 관련된 안건이 2015년에는 오직 1 건이었고 2016년에는 3 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현재 북경 지식재산권 법원이 안건을 수리한 상황으로부터 보면 이와 같은 안건은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할 것입니다.또한 원고와 피고가 모두 지방과 관련된 안건은 2015년에 총 51 건이었고 2016년에는 65 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에 이미 심사판결한 안건이 48 건으로 마찬가지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목하여야 할 점은 중국 대륙지역 권리자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 594 건에서 총 622 명의 피고와 관련되며 그 중 피고가 북경인 분은 348 명으로 55.9%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경외(京外)인 분이 44.1%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 및 홍콩.마카오.대만과 관련된 권리자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 74 건에서 총 93 명의 피고와 관련되며 그 중 피고가 북경인 분은 39 명으로 단 41.9%를 차지하였고 피고가 경외(京外)인 비례가 58.1%에 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피고의 주소지를 주요 관할 연결점으로 규정한 상황하에서도 상기에서 언급한 피고가 경외(京外)인 비례가 높은 상황이 나타난것은 국내외 권리자가 북경 지식재산권 법원을 선택하여 특허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북경 지식재산권 법원이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우선적으로 선택받는 지위가 점차 확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6. 특허분쟁 수량과 지역경제 발달수준은 정비례합니다.

민사 주체 사이에 발생한 특허분쟁은 특허권 침해 뿐만 아니라 타인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제출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1) 특허권 침해분쟁

668 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서 중국 대륙에서는 총 186 명의 권리자가 594 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권리자 소재지 수량이 앞 3 위를 차지한것은 순차적으로 북경 69 명(37.1%), 광둥 34 명(18.3%), 절강 15 명(8.1%)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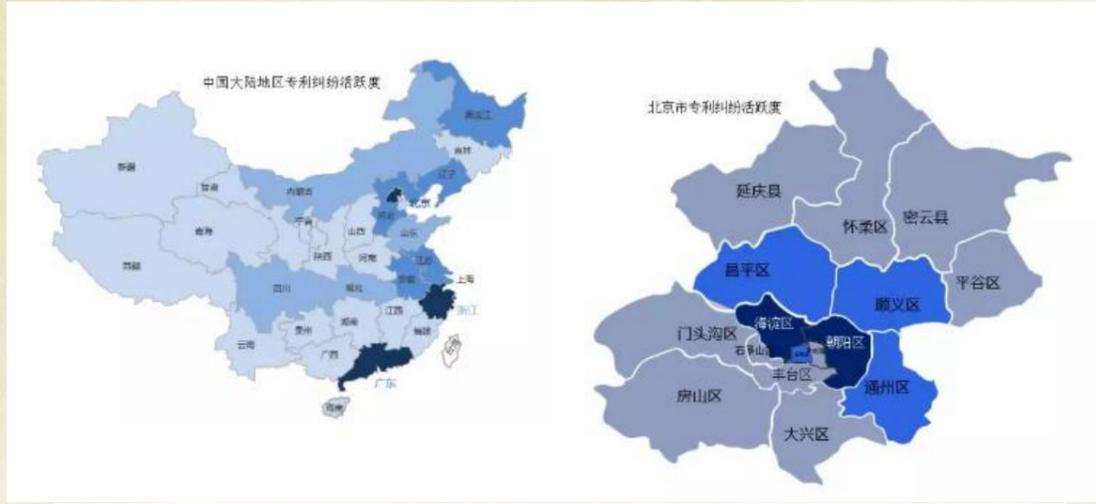
북경시 범위내에서 총 69 명의 권리자가 253 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경제총량이 전시에서 앞 2 위를 차지하는 해전구와 조양구에 주요 집중되어져 있었으며 차례로 18 명과 14 명이 있었습니다.또한 총 37 명의 해외에 관계된 권리자와 홍콩.마카오.대만과 관계된 권리자가 74 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권리자 수량이 앞 2 위를 차지한것은 일본 8 명,미국 6 명이었습니다.피고의 소재지 분포로부터 보았을 때 여전히 북경,광둥,절강이 수량적으로 앞 3 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 특허권 무효 행정분쟁건

576 건의 판결형식으로 종결한 특허권 무효 행정분쟁건에서 중국 대륙에서는 총 614 명이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그중 광둥 154 명,북경 92 명,절강 59 명,상해 59 명이었습니다. 해외 및 홍콩.마카오.대만과 관련된 총 20 명이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그중 미국 6 명,일본 5 명으로 앞 1, 2 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상기 서술한 침해와 무효 분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북경의 안건과 관련된 주체수량에 영향을 주는 법원소재지 요인을 제거하여도 상기 데이터는 여전히 특허 분쟁수량과 지역경제 발달 수준이 뚜렷하게 정비례관계 즉 지

역경제가 발달할 수록 특허분쟁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는것을 말할수 있습니다.



중국대륙지역 특허분쟁건 안건 발생빈도

북경 광둥 절강
흑룡강 요녕 하북 강서 안휘
내몽골 사천 호북 산둥
기타 성

북경시 특허분쟁건 안건 발생빈도

해전구 조양구
창평구 순의구 통주구
기타 구

오

해외 및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특허분쟁건 안건 발생빈도



7. 특허 민사분쟁과 특허 행정분쟁이 관련된 기술분야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국제특허분류표(IPC 분류)의 분류기준에 따라 특허 기술분야 정보를 나타내는 142 통의 민사재판문서에서 각 기술분야의 안건 수량 및 비례는 각각 생활필수품 43 건(30.3%); 전기 28 건(19.7%); 처리조작,운수 17 건(12.0%); 고정구조물 17 건(12.0%); 화학, 야금 15 건(10.6%), 물리학 14 건(9.9%); 기계공학 6 건(4.2%); 섬유,지류 2 건(1.3%)이었습니다.



하지만 특허 기술분야 정보를 나타내는 720 통의 특허권무효와 특허출원 기각재심 행정분쟁 재판문서에서의 각 기술 분야의 안건 수량 및 비중이 특허 민사분쟁과 비교하였을 때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화학,야금 143 건(19.9%); 처리조작, 운수 133 건(18.5%); 전기 114 건(15.8%); 기계공학 104 건(14.4%); 생활필수품 102 건(14.2%); 물리학 58 건(8.1%); 고정구조물 55 건(7.6%); 섬유,지류 11 건(1.4%)입니다.상기 데이터는 특허 민사분쟁과 특허 행정분쟁이 관련된 기술분야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는것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생활필수품,전기 등은 현단계에서 특허 침해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기술분야에 해당하며 해당 분야의 권리자가 권익보호 의식이 강하고 특허기술 운용이 활발하며 화학 야금,처리조작 운수 등은 이미 특허구도를 완성하였거나 특허구도를 진행중인 분야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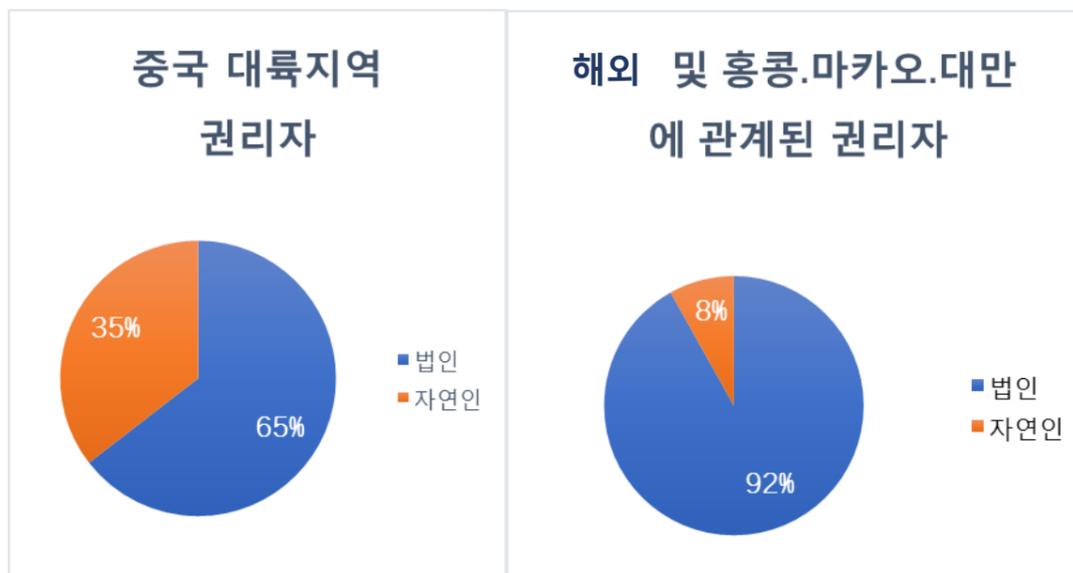


8. 국내외 특허권자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주요 아래 두방면에서 표현됩니다.

(1) 주체 유형: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186 명의 중국 대륙지역 권리자 중 법인과 자연인은 각 120 명과 66 명이며 양자의 비례는 약 1.8:1 입니다.하지만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37 명의 해외 및 홍콩.마카오.대만에 관계된 권리자 중 법인과 자연인은 각 34 명과 3 명이며 양자의 비례는 약 11.3:1 입니다. 현재의 우리 나라 특허제도는 특허권리 부여에 대하여 비교적 유리하며 상기 데이터 또한 중국 대륙지역의 자연인이 특허권의 획득 및 권익보호에 있어서 뚜렷한 우세를 가지고 있고 특허소송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중의 창업,만인의 혁신"이 특허분야에서의 구체적 표현인것을 말해줍니다.



(2) 특허권 유형 및 분야

중국 대륙지역의 권리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유형의 수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순차적으로 디자인 특허(51.7%), 발명 특허(29.8%), 실용신안 특허(18.5%)이며 해외 및 홍콩.마카오.대만에 관련된 권리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유형의 수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순차적으로 발명 특허(75.7%), 디자인 특허(21.6%), 실용신안 특허(2.7%)입니다. 또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수량이 앞 10위를 차지하는 권리자 중 중국 대륙지역에서 총 8명의 권리자가 디자인 특허권을 주장하였고 주로 가구, 가방, 생활용품 분야에 관련되며 단 2명이 발명 특허를 주장하였고 관련 상품은 각각 방화재료와 믹서기입니다. 해외 및 홍콩.마카오.대만에 관련된 권리자 중 총 7명이 발명 특허를 주장하였고 주로 통신, 계산기, 자동차 부품 등 분야에 관련되며 3명은 디자인 특허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 유의하셔야 할 점은 중국 대륙지역의 권리자 또는 해외 및 홍콩.마카오.대만에 관계된 권리자에 관계없이 모두 실용신안 특허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적었으며(권리자 특허유형에서 각각 18.5%와 2.7% 차지) 승소율은 오직 38.9%로 발명 특허와 디자인 특허의 승소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며 권익보호면에서도 약세에 처하였습니다.